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업계 혁신

위상강화
상생발전
가치상승

수신 각회원

(경유)

제목 2024년도 운수종사자 동영상(VOD) 및 집합[대면]교육 일정 안내

1.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및 위험물교육 일정 관련입니다.
3.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「**2024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**」이 10월에 마감되는 것과 관련하여 **현재교육예약율이 매우 저조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일정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, 각 회원님께서서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미 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·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4. 아울러,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올해 **보수교육은 집합 70%, 온라인교육 30% 병행 운영할 계획으로 온라인교육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□ 운수종사 동영상(VOD) 보수교육 일정

교육 과정	업 종	월	일 정	비 고
보수교육 (정규과정)	화물	5월 17일 ~ 9월 3일	매주 금요일 ~ 화요일	기수별 2,300명

- **예약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.**
 - ※ 경기도교통연수원 ☎1661-8111 (**전화예약불가**)
 - ※ 예약 시 **실명확인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여야 교육 접수 가능**
- 교육 예약 후 중복예약은 불가능하며 예약은 교육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.
- 유튜브 경기도교통연수원 채널에서 동영상(VOD) 접수방법 안내 및 학습방법 안내 추후 업로드 예정

- 붙임 1. 2024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(집합·온라인)
2. 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. 끝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이 사 장 전 재



2024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(집합 · 온라인)

☐ 보수교육

◦ 교육대상 :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(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제외)

교육 면제대상	*화물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는 면제 *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 · 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는 교육 면제
------------	---

◦ 교육예약 :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

◦ 교육형태 : 대면[집합]교육

번호	지역	교육장	교육일정	
			시간	일정
1	가 평(2회)	음악역1939	오전	3월 26일, 27일
2	고 양(2회)	어울림누리	오전	6월 26일, 27일
3	광 명(2회)	광명극장	오전	6월 7일, 8일
4	광 주(6회)	시청대강당	오전	3월 16일, 17일, 23일, 24일
			오후	3월 16일, 17일
5	김 포(5회)	통진두레문화센터	오전	6월 10일, 11일, 12일, 13일, 14일
6	성 남(3회)	시청대강당	오전	8월 24일, 26일, 27일
7	시 흥(5회)	정왕평생학습관	오전	5월 2일, 3일, 9일, 10일, 28일
8	안 산(4회)	올림픽기념관	오전	6월 24일, 25일, 26일, 27일
9	안 성(2회)	안성맞춤아트홀	오전	4월 4일, 5일
10	안 양(3회)	안양시청	오전	10월 15일, 16일, 17일
11	양 주(4회)	문화예술회관	오전	9월 4일, 5일, 6일
			오후	9월 6일
12	여 주(4회)	세종국악당	오전	4월 7일/ 6월30일/ 9월 19일, 20일
13	오 산(2회)	시청대회의실	오전	7월 16일, 17일
14	용 인(2회)	문예회관 처인홀	오전	4월 18일, 30일
15	파 주(4회)	운정행복센터	오전	3월 13일, 14일, 21일, 22일
16	포 천(3회)	반월아트홀	오전	10월 28일, 29일, 30일
17	하 남(3회)	하남시청별관 대강당	오전	9월 9일, 10일, 11일
18	수 원	경기도 교통연수원	강화	3월28일, 4월29일, 5월30일, 6월20일, 7월24일, 8월22일, 9월26일, 10월31일, 11월21일, 12월19일
			보수 일반	【화물평일】 3월(18,25)일/ 4월(15,22)일 / 5월(20,27,30)일/ 6월(3,17,24)일/ 7월(1,8,15)일/ 9월(6,9,23,30)일/ 10월(7,14,21,25,28,29)일 【화물주말】 3월(17)일/ 4월(7,13,14,21)일/ 5월(11,12,19,25,26)일/ 6월(2,9,15,16,22,23)일/ 7월(7,13,14,20)일/ 8월(31)일/ 9월(8,21,22,29)일 /10월(6,19,20,26,27)일(오전/오후)

◦ **교육형태 : 온라인 동영상(VOD) 교육**

교육 시간	4시간
교육 예약	홈페이지내에서 교육예약
교육 일정	5월 17일 ~ 9월 3일
교육 방법	- 스마트기기(PC 및 모바일)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- 5일 이내 4시간 동영상(VOD) 교육 수강 완료

◦ **교육 예약 : 2월 15일부터 예약 가능**

- 예약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**본인 실명인증 후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능**
- 학습방법 총 4시간으로 **수강 시작일로부터 수강 마감일(오후 23시 50분)까지 5일 이내에 문제와 진도를 100% 완료**해야 합니다
- 동영상 학습은 **크롬 최적화**되어 있습니다. 동영상 학습이 원활하지 않으면 크롬으로 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앱(어플)을 업데이트 후 접속해서 교육

위험물교육

- 교육대상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**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**
※ 단말기장치장착 : 위험물, 지정폐기물, 유해화학물질, 고압가스 차량

교육 면제대상	*화물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는 면제 *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·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는 교육 면제 *(보수교육 면제) 위험물 운전자교육 8시간 이수자는 당해 연도 4시간의 보수교육 면제
---------	---

◦ **교육형태 : 대면[집합]교육**

- **교육장소 : 경기도교통연수원(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91번길 6)**
- **교육시간 : 09:00 ~ 18:00 (휴식시간1시간 포함)**
- **교육예약 :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**

교육장	교육일	교육시간	비고
경기도교통연수원(수원)	4월 28일(일)	09:00 ~ 18:00	휴식시간 1시간포함
	7월 21일(일)	09:00 ~ 18:00	
	10월 12일(토)	09:00 ~ 18:00	
	12월 2일(월)	09:00 ~ 18:00	

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[별표 1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10호서목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처 분 기 준
10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○사업 일부정지(10일)

[별표 2]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7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3호머목, 제2호의 제17호차목, 제2호 비고 제1호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징 금 의 금 액
3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30만원

※ 비고

-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.
(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)
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태 료 금 액
아.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,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5호	50만원
보.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	50만원